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심사보고서

2001. 9. 18.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9월 10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1년 9월 11일
- 다. 상정일자 : 제82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1. 9. 1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가. 제안이유

구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 또는 해외로 입양된 입양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해외 입양인이 모국에 대한 자긍심과 뿌리의 인식을 고취토록 하는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2002 월드컵 경기」와 관련하여 많은 외국손님들이 우리구를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계기와 국제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 외국인으로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외국인으로서 우리구를 방문하는 외빈
 - 해외 입양자로서 우리구에 관심을 갖고 우리구를 방문하

는 자

- 현지 외국인증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공공단체의 장
 -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 10인 이상의 구민
-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
 - 위원장 : 부구청장
 - 부위원장 : 위원증 호선
 - 위원 : 국장급 이상 3명, 구의원 2명, 기타 2명
 - ※ 기타 : 규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 기능
 -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그 수여의 적격성 심사
 -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 수여대상자 결정
 -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 명예구민증 수여자의 예우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2조)
 - 구민에 준하여 원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 혜택부여
 - 구민의 날 및 구 주관 각종행사 등에 초청
 -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기회 부여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청강사로 활용

3. 전문위원 겸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조례안은 지난 4월 3일 구 관내에 소재한 흘트아동복지

회로부터 해외입양인 “명예마포구민증” 발급요청에 따라, 뿌리를 찾아 모국을 방문하는 해외입양인과 구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 및 구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등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

<주요내용>

안 제3조에는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고 타의 귀감이 되는 외국인과 구를 방문하는 외빈 및 해외입양자와 현지 외국인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여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는 자로는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10조에서는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적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음.

<검토의견>

구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과 구를 방문하는 외빈 및 뿌리를 찾아 모국을 방문하는 해외입양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과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해외입양인에게는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등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안 제4조에 규정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에 구민의 대표인 마포구의회 의원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는 추천된 수여대상자를 심사함에 있어 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대상자 심사에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요지(유응봉 위원) : 시행규칙에 명예구민증 수여자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제정할 생각이 있는가?
- 답변요지(이은규 총무과장) : 있음.

5. 토론요지 : 수정(안) 의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1. 9. 18. 신봉현 위원 외 1인

나. 수정이유

-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수여대상자 추천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수정코자 함.

다. 수정골자

- (수여대상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을(수여대상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구 의원,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으로 수정함.
(안 제4조)

7. 심사결과 : 수정(안)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사항 : 수정(안)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에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1. 9. 18.
제 안 자 : 총무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동 조례안의 내용중 수여대상자 추천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수정코자 함.

2. 주요수정골자

- (수여대상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을(수여대상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구 의원,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으로 수정함.
(안 제4조)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4조(수여대상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 여 후보자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수여대상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구의원,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 단체의 장 ————— ————— —————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외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1. 9.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구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 또는 해외로 입양된 입양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해외 입양인이 모국에 대한 자긍심과 뿌리의 인식을 고취토록 하는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2002 월드컵 경기」와 관련하여 많은 외국 손님들이 우리구를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계기와 국제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1) 외국인으로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2) 외국인으로서 우리구를 방문하는 외빈
- (3) 해외 입양자로서 우리구에 관심을 갖고 우리구를 방문하는 자
- (4) 현지 외국인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1) 공공단체의 장
- (2)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 (3) 10이상의 구민

다.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1)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
 - 위원장 : 부구청장
 - 부위원장 : 위원중 호선
 - 위원 : 국장급 이상 3명, 구의원 2명, 기타 2명
- ※ 기타 : 구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 (2) 기능
 -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그 수여의 적격성 심사
 -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 (3) 수여 대상자결정
 -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라. 명예구민증 수여자의 예우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1) 구민에 준하여 원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 혜택부여
- (2) 구민의 날 및 구 주관 각종행사 등에 초청
- (3)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기회 부여
-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청강사로 활용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2000. 1. 12. 법률 제6115호) 제15조

4. 조례(안) : 덧붙임

5. 예산조치 : 필요함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01. 7. 10 ~ 2001. 7.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1. 8. 31(원안의결)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해외 입양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 입양인이 모국에 대한 자긍심과 뿌리의 인식을 고취하는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구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 가. 대내·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 나. 구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등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 다. 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라.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자
2. "외빈"이라 함은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장, 국제평화유지 및 친선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3. "해외입양자"라 함은 국내입양기관을 통하여 해외에 입양된 자를 말한다
4. "공공단체의 장"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장을 말한다

제3조(수여대상) ①명예구민증은 외국인으로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고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를 방문하는 외빈, 해외 입양자 및 현지 외국인증 특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수여대상자 추천) 공공단체의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장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본청 국장급이상 공무원 3인

2. 구의원 2인

3. 기타 구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인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씩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주민자치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책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중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심의안건 및 의결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수여방법 등)** ①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대상자가 구를 방문하였을 때 별표1의 명예구민증과 별표2의 명예구민증 명서를 수여한다.
②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규격은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념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13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 부여
2. 구민의 날 및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초청
3.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기회 부여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
②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명예 구민증 수여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4조(명예구민증의 취소)**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명예구민증수여대상자 추천서(안 제4조관련)

1. 인적사항

성명			국적		
생년월일		직업·직위			
가족관계		사용언어		한국어 구사정도	상중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2. 주요경력

3. 공적사항, 추천사유(별지 작성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소속(주소)

전화 : 담당자 :

추천자 : ○○○○장 ○○○ ⑨

- * 1. 구민추천의 경우에는 연대서명서 첨부
- 2. 위 기재 내용중 필요한 경우는 영문표기를 부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안 제5조 관련)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귀하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별표 1)

명예구민증(안 제12조 관련)

제 호	No _____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of Mapo district
명예구민증	○○○
○○○	I,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Mapo-gu, am privileged to present this certificate to, and hereby confer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of Mapo district upon.
년 월 일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⑨	Mayor of Mapo-gu Presented this ○○th day of ○○○ ○○○○ Mapo-gu, seoul, Korea

규격	비고
기본규격 : 가로6cm×세로 8.5cm ※ 변형가능	<input type="radio"/> 바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마포구휘장 <input type="radio"/> 글씨 : 검정색 <input type="radio"/> 사용언어 : 한글(앞면), 영어(뒷면)

[별표 2]

명예구민증명서(안 제12조 관련)

<u>제 . 호</u> 명예구민증명서 ○○○ 년 월 일생 상기인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 부터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실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u>No</u> _____ Certification of Honorary Citizenship of Mapo district ○○○ <p>This certifies that the above person has been conferred with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of Mapo district by the Mayor of Mapo-gu</p> ○○/○○, ○○○○ ○○○ Mayor of Mapo-gu
---	---

규격	비고
기본규격 : 420mm×290mm ※ 변형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마포구휘장 ○ 글씨 : 검정색 ○ 기타 : 구 휘장이 압날된 원형과 리본형 은박지 부착 (우측 하단)

[별지 제3호 서식]

명예구민증 수여기록 대장(안 제13조관련)

연번	수여 년월일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공적내용	분야	주소	연락처	비고

■ 규격 : A4 210×297mm